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집	일자	2024	결	관	장
번	시간	-02-21			
	번호	202	재	사	무
처리과	가족지원팀		공	부	장
담당자	이성숙		람	팀	장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제도 안내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애인 유권자 등에 대한 투표편의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기관(단체) 및 회원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제도 안내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귀복지관장, 제주도농아복지관장,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자,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대표자,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장,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장,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장,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장 [무순]

수신자

*주무관 이 성 숙 선거담당관 최미경 선거과장

전결 02/15
2월 23

협조자

시행 선거과-493 (2024. 2. 15.) 접수 ()

우 63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상로 506 / https://jj.nec.go.kr
전화 (064)722-4495 /전송 0505-058-3703 / ss0910@nec.go.kr / 공개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제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I.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관련 규정	1
II.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	2
1. 주요 개선사항	3
2. 선거정보 제공	4
3. (사전)투표소 투표편의 제공	7

I.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관련 규정

조 항	내 용
법 제6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법 제38조 법 제149조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의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 거주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의무 ※ 신고인 수 10인 이상 시설, 후보자 등이 설치를 요청한 신고인 수 10인 미만 시설 [법 제271조제7항] 기표소 미설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65조 법 제122조의2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신할 수 있음)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제출 ※ 점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고, 그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법 제261조제3항]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70조~제74조 법 제82조 법 제82조의2 법 제137조의2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 ※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대담·토론회 등
법 제147조 규칙 제67조의2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법 제151조 규칙 제74조	시각장애인을용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활용
법 제153조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작·발송
법 제157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투표보조

II.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 개요 >

투표편의 유형	장애유형	투표편의 내용
선거정보 제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장애인·다문화 유권자 등 웹 정보탐색을 어려워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웹페이지 운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통해 투표일시, 투표방법 안내 후보자가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 취합·발송 문자·점자 정보 취득이 어려운 어르신·시각장애인 등 대상 ARS를 이용한 투표안내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 투표안내 영상을 통해 투표일시, 투표방법 안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시 수어 및 자막 방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는 이유, 투표방법 및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한 책자 및 애니메이션 제작 [신규] 정당·후보자 등 제공용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 개발 → 정당에 선거공보 작성 시 활용하도록 안내
투표편의 물품 및 인적지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장애인·임신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 확보 불가피하게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임시기표소 설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배치하여 (사전) 투표소 이동 지원 투표절차를 어려워하는 유권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에 투표가이드북·리플릿 비치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목발 이용자 및 유모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 경사로 설치 (사전)투표소에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대형기표대 비치 [개선] 일반형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 특수형 기표용구(레일버튼형) 투표소에 비치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선거인 대상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제공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통화 수어통역 제공

1. 주요 개선사항

가. 특수형 기표용구 개선

- 목 적 :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 하면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형 기표용구 개선
- 내 용 :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 등 대상자 350명을 모집하여 특수형 기표용구 샘플을 배부하고, 사용편의성 및 수요조사 실시
 ⇨ 사용편의성(82%) 및 사표방지(82.6%) 부문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전면 교체

※ 기표용구가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 걸림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나.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용어집 개발

- 목 적 :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용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 개발
- 내 용 : 일반 문서와 구분되는 선거공보의 특성(제한된 면수, 법정 제출기한, 단기간에 후보자 수에 따라 증가하는 물량 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용어집을 개발하여 정당에 안내



가이드 및 용어집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란 무엇인가?

- 고소화된 언어 및 문법
- 최소한의 구문법
- 단순화된 문법, 관어문 및 대조문
- 지체와 특성 표시자(괄호, 밑줄)는 사용하지

1. 어휘 및 문장

	○	✖
1. 알 수 없는 낱말을 붙여 놓거나 발음이 어려운 낱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을 적으십시오. ▶ 명을 적으십시오. ▶ 명을 적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복수인칭을 사용하는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당당하게 당선을 준비합니다. ▶ 우리는 당당하게 당선을 준비합니다. ▶ 우리는 당당하게 당선을 준비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당당하게 당선을 준비합니다. ▶ 우리는 당당하게 당선을 준비합니다. ▶ 우리는 당당하게 당선을 준비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용어집

간소(간소 해구, 간소 가법)

뜻: 차분, 단정, 명료한 화사

원문: 간소 가법 지침

쉬운 용어 제시: 차분, 단정, 명료한 화사에 대해 도움을 준다

가법

뜻: 원래 또는 법이나 규칙을 새롭게 바꾸는 것

원문: 가법 지침

쉬운 용어 제시: 형제(형제) 지침을 새롭게 바꾼다

가법

뜻: 어떤 일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원문: 가법 지침

쉬운 용어 제시: 어떤 일의 중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방법

간접(간접)

뜻: 명백하게 하지 않음

원문: 간접 지침

쉬운 용어 제시: 명백하게 하지 않음

간접

뜻: 내마는 하는 것을

원문: 간접 지침

쉬운 용어 제시: 명백하게 하지 않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용어집>

2. 선거정보 제공

가.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선거안내 웹페이지 운영

- 기 간 : 2024. 2. 19. ~ 4. 10.(예정)
- 목 적 : 웹 정보탐색이 어려운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내 투표소 찾기, 정책공약 등 자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킷 링크로 구성된 웹페이지 운영
- 접속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안내 웹페이지' 배너 클릭 또는 세대마다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나. 정책·공약마당을 통한 선거정보 제공

- 목 적 : 후보자의 정책공약·선거공보 및 정책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접근성 확보
 - ※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음성 출력이 가능한 형태의 파일 업로드
- 접속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책·공약마당' 클릭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policy.nec.go.kr> 입력

다.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관련

- 목 적 : 기관·시설의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표소 운영 절차 및 투표방법 등 안내
- 내 용

구 분	내 용	대 상
매 뉴 얼 교육영상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방법 및 절차, 위반행위 등 안내	기관·시설의 장
투표안내 리플릿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시 주의사항 및 투표방법 안내	기관·시설 거주 거소투표신고인



<매뉴얼>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안내 리플릿>

라. 수어 투표안내 영상

- 목 적 : 청각장애선거인에게 수어·자막·자료영상 등을 활용해 투표 관련 정보 안내
- 시청방법
 - 선거안내 웹페이지에서 '수어투표안내영상' 클릭
 - 유튜브에서 '수어투표안내' 검색

마. 점자형 투표안내문

- 목 적 :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에 대해 점자, 음성 등으로 안내
 - ※ 음성CD,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포함
- 열람방법 : 시각장애인세대에 우편으로 발송

바.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투표안내

- 목 적 : 문자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 회선 운영
 - ※ 운영기간 : 2. 26. ~ 4. 10. 운영 예정
- 이용방법 : 점자형 투표안내문 표지에 적힌 ARS 번호로 전화

사.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 목 적 :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쉽게 안내
- 시청방법
 - 선거안내 웹페이지에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클릭
 - 유튜브에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검색

아.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책자

- 목 적 : 선거의 의미, 투표를 하는 이유,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
 - 구 성 : 투표 방법, 투표용지 모형, 책자 활용방법(교육자용)
 - 열람방법 : 선거안내 웹페이지에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책자' 클릭
- ※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등재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부 예정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책자 >

< 책자활용방법(교육자용) >

3. (사전)투표소 투표편의 제공

가.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사전)투표소 확보

-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 확보

구 분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전 체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치 투표소	전 체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치 투표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3개소	43개소 (100%)	230개소	230개소 (100%)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43개소	43개소 (100%)	230개소	230개소 (100%)

※ 2024. 2. 15. 기준(투표소 공고 : 2024. 3. 31.)

나. 중증장애인 등 대상 이동지원 차량 지원

-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 관할 시선관위 또는 단체에 전화로 신청하여 이용 가능

※ 추후 중증장애인 등 이동약자 대상 교통편의 제공 사항 별도 안내 예정

다. 투표편의지원 안내문

-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편의 물품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에 사진이 첨부된 안내문을 부착
-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리플릿, 확대경,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 지원 내용 안내

라. [사전]투표소 수어통역

-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수어통역 지원

마.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인쇄된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선거인수만큼 제작하여 제공
-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 봉투를 비치하여 투표보조용구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일괄 회수

바. 특수형 기표용구

- 일반형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제공
- 레일버튼형으로 제작하여 기표란 이동 용이
※ 사용방법 : [별지 1] 참조

사. 대형기표대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모든 (사전)투표소에 설치
- 선거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높이조절 기표판 부착

<p>어르신·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안내</p> <p>투표할 때나 기표가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요 손을 움직이기 힘들면 투표용지를 끼운 다음 버튼을 눌러 기표하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투표 가이드북과 안내 리플렛을 읽어보세요. 투표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잘 안보여요 글씨를 크게 보아야 하면 확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씨를 볼 수 없으면 정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투표하는 한 일로, 이들을 위한 큰 일로</p>		
<p>< 투표편의지원 안내문 ></p>	<p>< 대형기표대 ></p>	<p>< 특수형 기표용구 ></p>

아. 임시경사로

- (사전)투표소 주출입구 등 이동 경로의 단차 제거를 위해 임시경사로 설치

자. 투표가이드북 · 리플릿

- 선거인에게 적절한 투표 지원이 가능하도록 투표가이드북 및 투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모든 (사전)투표소 비치
- 투표사무원이 장애유형별 특성 및 지원방법을 알기 쉽도록 가독성 제고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본인 확인

<투표가이드북 - 선거인면>

<투표가이드북 - 투표사무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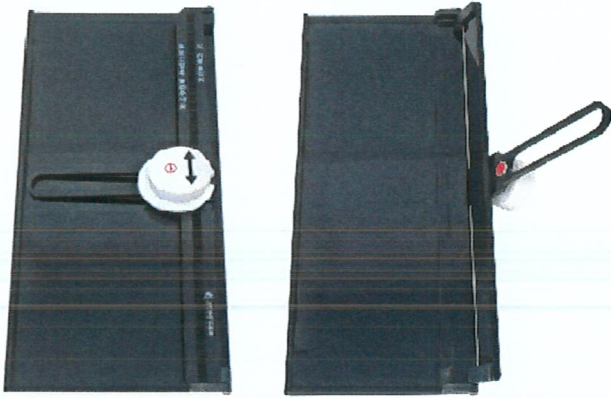


투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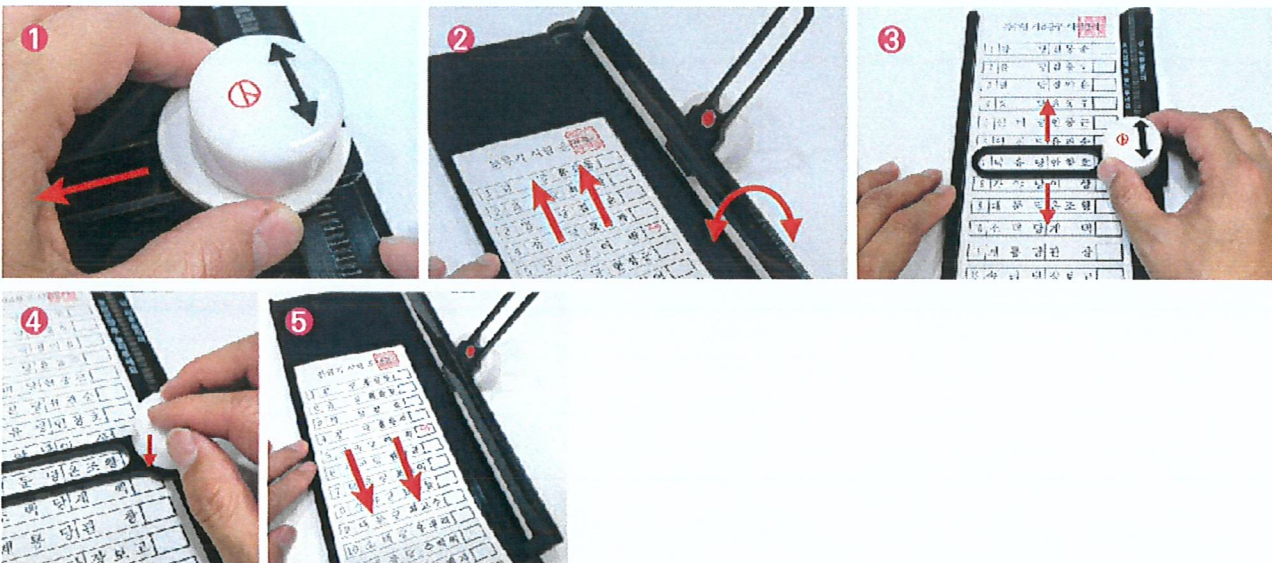
<투표안내 리플릿>

특수형 기표용구 사용 방법

1. 레일버튼형 기표용구



2. 사용방법



- 1 기표용구에 끼워진 눌림방지캡을 제거합니다.
- 2 기표버튼 레일을 오른쪽으로 젖힌 후에 투표용지를 넣고 레일을 원위치 시킵니다.
- 3 기표버튼을 상·하로 움직여 선정한 후보자 위치로 옮겨줍니다.
- 4 기표용구 버튼을 눌러 기표합니다.
- 5 투표지는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레일을 오른쪽으로 젖힌 후에 빼냅니다.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 § 218①, 규 § 136의2
'23. 1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 § 4, § 60의2①, 규 § 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 § 218의4, 6 규 § 136의4, 5
'23. 12. 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 § 51①②, 규 § 26의2③
'23. 12. 12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 § 60의2①
'24. 1. 11까지	목	각급선거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동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 §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법 § 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 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 § 218의5, 6 규 § 136의4, 5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 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 § 218의8, 9 규 § 136의8, 9
3. 11.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 § 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 § 37, 규 § 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법 § 38, 규 §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 § 65⑤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 § 49, 규 § 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 § 218의17①⑦, 규 § 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 § 64②, 규 § 29④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 § 33③
3. 29.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 § 65⑥, 규 §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 § 64②, 규 § 29②⑤
3. 29.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 § 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 § 65⑥, 154①⑤, 규 §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 § 65⑥, 153①, 규 § 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 장이 정한 일시	법 § 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 § 155②, § 158
4. 10.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 제10장 법 제11장
4. 22.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 § 122의①, 민법 § 161 규 § 51의3①
6. 9.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 § 122의2①, 규 § 51의3②